

- 아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-

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

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6. 16.

아 산 시 장

1	사업개요
---	------

- 사업명 :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
- 사업내용 : 소규모 시설 및 장비 등 지원
- 지원규모 : 금12,500천원(기업 자부담 20% 포함)
- 지원대상 : 아산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
 - 예비·인증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(사회적 ○, 일반 X)
- 지원 제외대상
 -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
 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기업
 - 영업활동 관련,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개발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
 - 불법 시위를 주최,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법인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
- 행정처분기업 : 주의 2회, 경고 1회(기준 : 2024. 1. 1. ~ 2025년 공고일)

2 지원방법

- 신청기간 : 2025. 6. 17.(화) ~ 2025. 7. 2.(수) 18:00까지
- 신청금액 : 1 기업당 최대 2,500천원 이하(자부담금 20% 포함)
- 사업비 구성 내역
 - 총사업비(100%) = 보조금(80%) + 자부담(20% 이상)
 - 신청 접수 및 선정 기업 수에 사업비는 변동할 수 있음
 -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(기업 별도 자부담)

<지원 신청 사업비 구성 예시>

지원 사업비 신청액 (단위 : 원)			부가세 (B)
총 사업비(A)	보조금 (80%)	자부담 (20%)	
1,000,000	800,000	200,000	별도 자부담
1,500,000	1,200,000	300,000	별도 자부담
2,000,000	1,600,000	400,000	별도 자부담
2,500,000	2,000,000	500,000	별도 자부담

- 지원 대상 : 영업이익 등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본재 비용
 -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장비 구입
예) 매출증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계장비, 차량구입, 시설보수 등
(지원품목 예시: 영상장비, 반죽기, HACCP장비, 교육용 노트북, 생산시설 증대 등)
- 지원 제외 대상
 - 단순 사무실 운영을 위한 PC, 노트북, 사무기기, 직원 편의시설 등 기본집기 불가
 - 유형의 시설 장비 대여 불가
 - 기간의 정함이 있는 라이선스 구입 불가(포토샵, 이미지사이트 등)

- 인사, 노무, 회계 등의 경영 컨설팅 불가
- 부가가치세, 각종 세금 등 사용 불가
- 이외 고용부 (예비)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불가 항목과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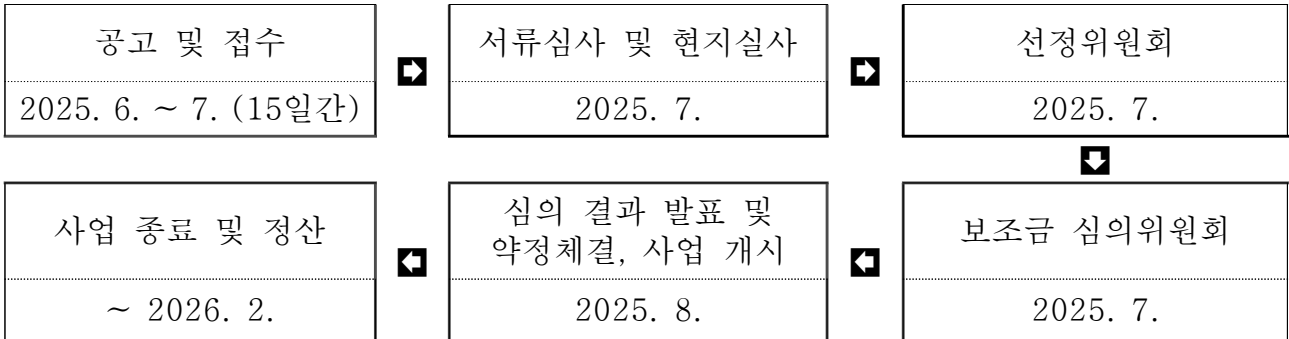
<지원대상>

영역	시설 장비 종류
생산	반죽기, 성형기, 금형, 추출기, 오븐, 레이저커팅기 등
판매	포스기, 키오스크, 포장기 등
용역	촬영 장비, 음식물 처리기, 드라이아이스 세척기, 청소기, 측정 장비 등

<지원제외>

연번	지원 제외 대상
①	차량구입비, 건설장비, 홈페이지 구축비,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예시) 공간적개념의 시설비(하우스, 건축물, 저온저장고 등)
②	직접 생산·판매·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 용도의 시설 장비 예시) 직원복지용,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내용과 무관한 사용 용도
③	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·의자 등 사무기기 구입 예시) 책상, 의자, 음식물 처리기, 청소기,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등
④	소모품, 부품, 부속품, 재료비(물품 재료 및 포장비 등), 사무용품, 사무관리비(공간임대료 등) 예시) 소모품 기준 : 충청남도물품관리 조례 [별표1], 내용연수 기준 : 조달청 고시 기준
⑤	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 장비
⑥	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가능한 경비 등
⑦	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시,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

3 추진절차



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25. 6. 17.(화) 09:00 ~ 2025. 7. 2.(수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
- 접수처 및 문의사항 :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(☎041-530-6049)

5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

- 심사기준
 - 평가항목(사업성과, 사회적가치실현, 사업내용, 지역내 파급효과 등)에 대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 【서식6 참고】
- 선정방법 : 서류심사 → 내외부 심사(1차) → 아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(2차)
 -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
 - 아산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(지방재정법 제32조의 2)

6

제출서류

- ① 신청서 【서식 1】 1부.
- ② 사업계획서 【서식 2】 1부.
- ③ 예산운용계획서 【서식 3】 1부.
 -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.
- ④ 사업자등록증(사본) 1부.
- ⑤ 법인등기부등본(원본-말소사항 포함) 1부.
- ⑥ 최근 3년(2022년~2024년)간 결산재무제표(세무사 확인 필수) 각 1부.
 - 2024년 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또는 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’ 대체 가능
- ⑦ 최근 1년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표 각 1부.
- ⑧ 고용 근로자 명단 【서식 4】 및 증명 서류 각 1부.
 - 명단 서식에 상근 및 비상근 표시
 -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
 - ※ 취약계층: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(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) 적용
- ⑨ 현재 기준 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’ 1부.
- ⑩ 직전년도(2024. 1월 기준) “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” 1부.
 - ※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- ⑪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.
- ⑫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【서식 5】 1부.

7

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민간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전부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

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안전부 예규6호)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,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며,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.
- 상세한 내용은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(☎ 540-609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 서식1 】

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					
신청 기업	기업명			대표자명	
				전화번호	
	소재지				
	사업자 등록번호			설립일	
				인증(지정)일	
	유 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비사회적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마을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자활기업			
	고 용 (현재)	구분	총인원	자체고용	정부지원
총계		명	명	명	명
취약계층		명	명	명	명
비취약계층		명	명	명	명
매출액	2022년	천원 / 2023년	천원 / 2024년	천원	
사업 개요	사업 총예산(A+B)	보조금 지원신청금액(A)		자체부담금액(B)	
	천원	천원		천원	
	사업기간	년 월 일 ~		년 월 일	
	사업목적 및 주요내용				
사업 관리	구분	관리책임자		실무자	
	성명				
	소속 및 직위				
	전화번호/휴대전화				
	이메일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5년도 아산시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업명 : 대표 : (서명)</p>					
아산시장 귀하					
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. ② 사업계획서(사업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) 1부. ③ 예산운용계획서 1부. ④ 사업자등록증 1부. ⑤ 법인등기부등본(원본-말소사항 포함) 1부.			⑥ 최근 3년(2022년~2024년)간 결산재무제표 (세무사 확인 필수) 각 1부. ⑦ 최근 1년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표 각 1부. ⑧ 고용 근로자 명단 및 증명 서류 각 1부. - 현재 기준 / 2024.1월 기준 ⑨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. ⑩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.		

【 서식2 】

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

1. 사업목적 및 개요

신청사업명	○
주요사업 내용	○ 필요성 ○ 사업내용(구체적으로 작성) ○ 향후계획 등

2. 시설·장비 관련 현황

시설보유현황	○ ○ ○
장비보유현황	○ ○ ○

※ 기재 범위 : 생산과 관련된 시설·장비(사무집기 등은 제외)

3. 구입계획 시설·장비 내역

시설·장비명	용도 및 기능	소요예산 (천원)	산출내역	구입예정 시기

※ 시설·장비(물품)별 비교견적서 첨부(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)

4. 소요사업비 대책

(단위 : 천원)

총 소요사업비	지원금	자부담	비 고
			*부가가치세 별도 자부담

※ 사업계획상에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
(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)

5. 시설·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

- 고용창출 기대효과(계량적 수치로 표시) :
- 매출증대 증 생산성 향상(사업수행 전후의 매출액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표시) :

6.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

-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(사회적경제, 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실적) :

【 서식3 】

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

1. 총괄 예산

총사업비	보조금	자부담	비 고

2. 세부사업별 예산계획

구 분	세부항목	총소요예산	보조금	자부담	세부산출내역	비 고
세부사업명						
세부사업명						
세부사업명						
세부사업명						

- *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(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)
- *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은 보조금의 20% 이상 반드시 유지해야 함

【 서식4 】

고용 근로자 명단

연번	성 명	생년월일	연 락 처	근로형태	취약계층 해당여부	증빙 자료
1	홍길동	00년 01월 01일	010-0000-0000	상근	고령자	주민등록증 사본
2	장영실	00년 00월 00일	010-0000-0000	비상근	해당없음	해당없음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11						
12						
13						
14						
15						
16						
17						
18						
19						
20						

* 4대보험 가입자 명부, 취약계층 증빙서류 첨부

【 서식6 】

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평가표

지표별 (점수배분)	평가기준	배 점	평가점수
사업성과 (20점)	① 매출규모 : 10점 (2024년 매출액)	- 3억이상 기업 (10점) - 2억이상 3억미만 기업 (8점) - 8천만원이상 2억미만 기업 (6점) - 8천만원 미만 (4점)	
	② 매출증가 : 10점	- 75%이상 기업 (10점) - 50%이상 75%미만 기업 (8점) - 25%이상 50%미만 기업 (6점) - 25%미만 기업 (4점)	
일자리제공 (40점)	① 고용증가 및 유지율 : 20점 (비교 기준 :공고일 기준 1년 전)	- 60%이상 고용증가 (20점) - 30%이상 60%미만 고용증가(18점) - 30%이하 고용증가(15점) - 고용유지 (10점) - 20%이하 감소(8점) - 20~40%이하 감소(5점) - 40%이상 감소(0점)	
	② 고용 창출(근로자 수) : 10점	- 21명 이상 고용 (10점) - 11명 ~ 20명 고용 (8점) - 4명 ~ 10명 고용 (6점) - 1명 ~ 3명 고용 (4점)	
	③취약계층 고용비율 : 10점	- 70%이상 기업 (10점) - 25%이상 70%미만 기업(5점) - 25%미만 기업 (1점)	
사회적가치 실현 (15점)	사회서비스 지역사회공헌실적 : 15점 (2024년도 실적)	- S등급(15점) : 정기적, 계속적 실천 - A등급(10점) : 정기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 - B등급(5점) : 비정기적 실천 - C등급(0점) : 실천이 미비하거나 없음	
사업비 신청 타당성 (20점)	매출증대 및 추가고용 등 사업영역 확장성 : 20점	- 사업영역확장성 전부 입증가능(20점) - 사업영역 확장성 일부입증 가능(15점) - 주관적이거나,타당성 인정(10점) - 사업영역 확장성 미흡(0점)	
지역내 파급효과 (5점)	① 기업신뢰도, 사업계획의 적정성: 3점 ② 연대와 협력의 노력 등 (행사참여실적) : 2점	- 정성평가	
합 계			